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511
----------	-------

발의연월일 : 2026. 9. 21.

발 의 자 : 조지연·윤용근·김성원
박준태·한지아·이소희
임이자·강승규·김소희
김기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생활소음·진동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규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은 대상지역, 소음원, 시간대별로 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dB 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인구가 밀집된 일부 지역에서는 소음·진동이 현행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와 갈등을 유발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규제기준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1조제2항 단서 신설 등).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음·진동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조례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u><단서 신설></u>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① (현행과 같음) ② ----- ----- -----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조례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u><신설></u>	